



일본 국회,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연체기간 연장 의결

이상우 선임연구원

■ 일본 국회는 8월 4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보험료 납입 연체기간 경과로 연금의 수급권이 중지되는 현행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동 연체기간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의결함.

- 최근 일본은 실업률 증가와 비정규형태의 고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 미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0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이 59.3%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.
- 일본의 국민연금은 연금수급을 위해서 25년 이상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하지만, 보험료 납입 연체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경우 연금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무연금 상태에 놓이게 됨.
- 현재 국민연금은 40년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경우 월 6만 5,742엔(2011년 기준)의 만기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, 미납기간이 있는 다수의 가입자로 인해 평균 수령액이 월 4만 8,500엔 수준임.

■ 여당인 민주당은 연금보험료 미납 등으로 연금수급 자격이 중지되어 무연금·저연금 상태에 있는 사각계층을 구제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 경과 이후에도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2010년에도 발의한 바 있음.

- 이에 대해 자민당은 여당이 추진한 납입 연체기간 연장 법률안을 영구적으로 허용할 경우, 보험료 납입 지연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하였음.
- 민주당은 이러한 반대의견을 반영하여 보험료 납입연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되, 3년 동안만 시행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고 이번 국회기간에 여야가 이에 최종 합의함.

■ 동 개정안의 국회의결에 따라 보험료 납입 연체기간 10년 연장조치는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고, 3년이 경과하는 2014년 10월에 종료될 예정임.

- 한편, 후생노동성은 보험료 납입 연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최대 40만 명이 무연금에서 구제될 수 있고, 최대 1,710만 명에 달하는 저연금자의 연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.

(마이니치신문 8/3, 아사히신문 8/4 뉴스 종합)